

## 조선 후기 성별에 따른 자살의 해석\* - 正祖代 《審理錄》의 자살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

정 일 영\*\*

### 1. 머리말

자살하는 것은 세상에 진지한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 모리스 바레

자살사건은 우리에게 항상 충격을 주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자살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우리들은 자살 사건에 의해 충격이나 상처를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살자가 '왜 자살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던진다.<sup>1)</sup> 사실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뒤르켐의 연구<sup>2)</sup> 이래로, 자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뒤르켐이 자살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한 지가 100년 이상이 지났

음에도, 자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자살의 이유를 크게 사회적 이유와 개인적 이유로 나누고는 한다.<sup>3)</sup> 하지만 사실 자살의 이유를 두 가지 이유로 '나누어' 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어디까지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영역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결국 결론 부분에서는 모두 개인적 문제로 치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최근 자살과 다른 사회현상들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sup>5)</sup>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살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적 변수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 이 연구는 2006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지원하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내 자살 증가의 원인 분석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회, 경제학적 연구 : 다학제적 접근 및 국제비교' 중 질적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연구가 완성된 논문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와 배려를 해주신 한양대 예방의학과 신영진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서강대 사학과 박사과정

1)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지환된다. 즉 어떤 사람이 '왜 죽었는가?'라는 질문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인 것이다. 이에 대해 '기만 구조'가 구축되어 설명되지 않는 자살이 '좌절과 분노'를 자아낸다는 천선영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천선영, 자살의 이유를 알아야 하는 이유-근대적 자살 이해에 대한 사회이론적 논의, 사회와 이론 12, 2008).

2) 에밀 뒤르켐 *Emile Durkheim*. 김충선 옮김. 자살론. 청아출판사; 1994.

3) 오진탁. 자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 세종서적; 2008. 25-34쪽.

4) 각주 7에 언급되는 최근 연구들은 모두 자살의 원인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더라도 정작 결론 부분에 가서는 다시 개인적 문제로 돌아오는 연구가 적지 않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 개인이 ‘왜 스스로 죽음을 택했는가’는 사실 알 수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살한 이유는 이미 죽은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자살을 향해 던지는 질문을 바꿔보려고 한다. 그와 동시에 과거의 자살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사실 이 부분이야 말로 자살에 대한 사적(史的) 고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자살을 살펴봄으로써 자살에 대해 ‘왜 자살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자살을 보는가’라는 조급은 더 객관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과거의 인간들이 ‘왜’ 죽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보다도 자살에 대해 살아있는 자들이 어떤 요인을 자살의 이유로 꼽고 있으며, 자살자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뒤돌아보기’는 현재 우리가 서있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자살자에 대한 평가 속에서 자살이 정말 ‘자살’인가라는 질문 또한 진지하게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선 후기 《審理錄》을 바탕으로 자살을 살펴보고자 한다. 《審理錄》은 正祖 시대의 관례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審理錄》을 통해 그 시기의 판결이나 법제도를 살펴보거나<sup>6)</sup>, 당시의 범죄 양상을 분석해왔다.<sup>7)</sup> 이 연구들은 조선 후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그 시대의 제도적 측면만을 주목한 한계점이 있다. 제도나 법률이 정해져있다고 해서, 비슷해 보이는 모든 사례에 관련하여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審理錄》에 대한 선행 연구들 속에서 자살은 여전히 그늘 속에 숨겨져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살이 개인적 영역의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은 범죄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sup>8)</sup> 그러나 분명히 《審理錄》에는 적지 않은 자살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살사건은 이제까지 《審理錄》의 주요 연구 대상이었던 범죄들과는 분명 다른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성(gender)을 주요 변수로 분석을 시도할 것인데, 이 시도는 여성사적 관점에서 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강간이나 간통이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미리 정해진 도식

- 5) 홍성철·김문두·이상이. 사회계층이 자살 사망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4. 2003.  
신동준.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한국사회학 38-4. 2004.  
송태정·배민근·김기범.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LG경제연구원. 2005.  
은기수.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28-2. 2005.  
오진경·조영태·김창엽. 2000년 우리나라 성인 자살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18. 2005.  
노용환. 자살위험의 미시적 결정요인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3-1. 2007.  
박은옥·현미열·이창인 외. 우리나라 시·도별 자살 사망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7-1. 2007.  
이홍식 외. 자살의 이해와 예방. 학지사; 2008.
- 6) 권연웅. 심리록의 기초적 검토-정조대의 사회판결. 이기백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下. 일조각; 1994.  
조운선. 조선후기 법사학 연구의 현황.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 7) 심재우. 『審理錄』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서울의 범죄상. 서울학연구 17. 서울학연구소. 2001.  
이수옥. 조선 후기 여성과 범죄-18세기 『審理錄』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8) 《欽欽新書》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은 김선경의 연구도 마찬가지다. 이 연구에서도 살인 사건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김선경. 조선 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 역사연구 8. 2000). 그리고 중국 명·청대에 대한 연구 중 田汝康의 연구가 여성의 자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연구 역시 수절을 위해 자살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연구라고 보기보다는 정절에 대한 연구라고 봐야 할 것이다(田汝康. 이재정 옮김.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예문서원; 1999).

적 구도 속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반면에, 자살 사건은 사건의 성격상 남녀 모두가 일방적인 방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 자살에 대한 인식은 성차에 따라 판이하게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sup>9)</sup> 자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성과 관련 없는 사건이기에 오히려 성차 혹은 성담론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자살자는 이미 죽어 말이 없고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은 남아 있는 자들의 몫이라는 점에서, ‘자살의 해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살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임에도 범죄판결 사례집이라고 할 수 있는 《審理錄》에는 자살과 관련된 적지 않은 사례가 실려 있고, 그 중 대부분의 사건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 속에서 자살 및 성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審理錄》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審理錄》에 나타난 자살 사례들을 추출한 뒤, 성별과 사건 유형·자살 방법 등으로 분류하는 기초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연 그 시대의 자살은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고, 자살자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또 살아있는 자들이 꼽아낸 죽음의 ‘이유’는 어떠한 것들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싶다. 그 속에서 자살에 대한 인식이 성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비록 이 연구로 성급하게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조선 후기 자살에 대

한 인식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차에 대한 논의를 일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審理錄》에 나타난 자살 사례 분석

*자살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살해의 욕구, 살해당하려는 욕구, 살려는 욕구. - 매닝거*

이 글에서 주로 인용하게 될 사료는 정조대 살인 옥사에 대한 논의를 기록한 《審理錄》<sup>10)</sup>이다. 《審理錄》은 정조가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시작한 때부터 사죄(死罪) 사건에 관하여 손수 내린 판결을 모은 것으로, 정조 즉위 직후부터 편집 작업이 시작되어 정조 23년에 편집이 완료되었다.<sup>11)</sup> 이 기록은 살인사건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지방 관리들이 수사를 한 후 미진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시에, 수사 결과와 자신의 의견을 올리면 형조(刑曹)가 다시 정조에게 의견을 올린 뒤 정조가 최종 처분을 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초검(初檢)·재검(再檢)·삼검(三檢)을 통한 상처(傷處)와 실인(實因)<sup>12)</sup>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審理錄》을 사료로 사용할 때 무시할 수 없는 몇 가지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 일단 사건의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나와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있는(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정조의 최종 판결을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당시 위정자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심리(審理)란 국가적 경사나 재변이 있을 때, 또는 왕의 특명이 있을

9) 이 글이 ‘여성학적’ 관점에서 쓰여진 글은 아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10) 여기서 인용할 《審理錄》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2000년에 출판한 국역/영인본을 기본으로 한다. 이후 《審理錄》에 관련해서는 국역출판본의 권과 쪽으로만 표기한다.

11) 박병호. 심리록 해제. 국역 《審理錄》. 민족문화추진회; 2000. 1쪽.

12) 살해된 사람의 죽은 원인을 뜻함.

때 일시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억울한 옥사(獄事)가 있는지 살펴서 처리하는 정치적 행위였다.<sup>13)</sup> 그러므로 이 책에 수록된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형을 감해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해야만 한다.<sup>14)</sup>

이러한 한계점이 있지만, 《審理錄》만이 가지고 있는 사료로서의 장점이 있다. 일단 비슷한 시기를 다룬 정약용(丁若鏞)의 《欽欽新書》에 비해 사례가 훨씬 풍부하다는 점이다. 《審理錄》에는 약 24년에 걸쳐 1,095안에 이르는 사례들이 등장한다. 《朝鮮王朝實錄》과는 달리 평민·천민의 사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록 살인 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에 국한되었지만 사건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고도 자세한 편이다. 또 사건에 대한 판결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사이의 논의까지 담겨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하겠다. 특히 특정 시대에 국한하여 자살만을 선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조선시대의 사료는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審理錄》은 자살을 두고 벌여지는 여러 가지 논의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면서 《審理錄》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우선 《審理錄》의 사례들을 계량적으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審理錄》의 1,000건이 넘는 사례들 중에 ‘자살’과 관련된 사건들은 총 109건이다.<sup>18)</sup> 이 중 자살자가 남성인 경우<sup>19)</sup>는 47건인 반면에 여성이 자살자인 경우는 65건이다.<sup>20)</sup>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審理錄》에 나타난 자살자 및 자살 원인제공자 성별 분석<sup>15)</sup>

원인 제공자 \ 자살자	남				여				남녀공동			총 계
	자 살	자살 위장	기타 <sup>16)</sup>	소계	자 살	자살 위장	기 타	소계	자 살	자살 위장	기 타	
남	10	17	8	35	31	16	7	54	1	1	·	91
여	1	1	·	2	2	4	·	6	·	·	·	8
남녀공동	1	·	·	1	2	·	·	2	·	·	·	3
기 타 <sup>17)</sup>	4	·	2	6	·	·	·	·	·	·	1	7
계	16	18	10	44	35	20	7	62	1	1	1	109

13) 조순희. 위의 글; 5쪽.

14) 실제로 살인과 관계된 사건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판결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5%에 불과하다(이수옥. 위의 글; 7쪽).

15) 이 논문에 사실상 타살인 ‘자살위장’을 포함시킨 것은, 자살위장에 대한 논의 과정 중에서도 자살자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살위장은 최종 판결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한 가지 예로, 평산 최아기의 옥사(3권 150쪽)를 자살위장의 사례로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어머니가 간통을 하였는데 그것이 며느리에게 탄로 날까 두려워 며느리를 죽이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죽은 며느리의 시체를 목매달아 걸어 놓고는 자살한 것이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칼에 찢린 자국이 있고 목에 난 상처가 목을 매어 자살했을 때 난 상처와 달라 자살위장이 드러난 사건이다. 물론 자살위장은 자살과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이 표에서도 따로 분류해두었다.

16) 자살위장은 아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자살 여부가 논의된 사건(6건)과 자살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타인을 죽인 사건(1건)이 포함되어 있다.

17)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을 한 경우나 자살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처럼 원인제공자가 불분명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18) 자살이 사건의 주요 문제가 된 사건뿐만 아니라 자살로 가장한 사건, 관련 인물이 자살한 사건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19) 자살자, 자살시도자, 실인이 자살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포함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이 원인제공자가 되어 여성이 자살한 사건이 총 32건으로 다른 어떤 경우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과 남성이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자

살보다 자살 위장의 논의가 많은 반면, 남성이 원인 제공자이고 여성이 자살자인 경우 자살의 논의가 현저하게 많다<sup>21)</sup>. 뿐만 아니라 여성이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경우는 단 8건에 그치고 있다.

표 2. 《審理錄》에 나타난 자살 사건의 원인 및 방법

자살 원인	자살 방법	자살자 성별		소 계	총 계
		남 성	여 성		
분 노	칼	2	2	4	24
	액사 <sup>22)</sup>	7	3	10	
	음독 <sup>23)</sup>	1	6	7	
	투강 <sup>24)</sup>	1	2	3	
	단식 / 미상	·	·	·	
정 절 <sup>25)</sup>	칼	·	·	·	24
	액사		7	7	
	음독		10	10	
	투강		2	2	
	단식 / 미상		4 / 1	4 / 1	
도 피 <sup>26)</sup>	칼	4	·	4	7
	액사	2		2	
	음독	1		1	
	투강	·		·	
	단식 / 미상	·		·	
위 장	칼	1	·	1	39
	액사	13	10	23	
	음독	4	10	14	
	투강	·	1	1	
	단식 / 미상	·	·	·	
기 타 <sup>27)</sup>	칼	4	3	7	15
	액사	2	1	3	
	음독	2	2	4	
	투강	·	1	1	
	단식 / 미상	·	·	·	
총 계					109

20) 남성 자살자와 여성 자살자의 합계가 총 자살 사건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단일 사건에서 남성과 여성이 자살 및 자살시도를 한 것이 3건 있기 때문이다. <표 1>을 참조할 것.

21) 여기서 ‘논의’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당시에 자살 혹은 자살위장이라고 판명이 났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22) 縊死; 목을 매어 죽음.

23) 음독에는 주로 비소(砒素)나 간수가 이용되었으며, 복어알이 이용된 경우도 있다.

24) 投江; 강에 몸을 던져 익사하는 자살.

25) 남편이 죄를 지어 잡혀 들어가게 되자 자살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26) 여기서 도피란, 죄를 저지른 뒤에 죽음을 택하는 경우나 궁지에 몰렸을 때 자살했던 경우를 말한다.

27) 자살 여부 판단에 관련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은 타살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의 자살을 분석함에 있어 성차가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표 2>를 보면 가장 많은 자살 사건의 원인이 자살 위장이다. 이것은 《審理錄》의 사료적 특성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자살의 원인이 분노, 즉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분노를 참지 못한 사람들이 자살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건을 조사하는 위정자들이 개인의 성격을 자살의 이유로 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절’에 관련된 자살이다.

이 자살 유형은 ‘당연히’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자살인데, 전체 자살의 22%, 여성 자살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여성 자살자가 남성 자살자보다 18명 많은데, 결과적으로 정절에 관련된 자살이 이 수적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절과 여성의 자살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sup>28)</sup>

이 자살 유형은 ‘당연히’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자살인데, 전체 자살의 22%, 여성 자살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여성 자살자가 남성 자살자보다 18명 많은데, 결과적으로 정절에 관련된 자살이 이 수적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절과 여성의 자살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sup>29)</sup>

자살을 분석할 때 그 장소나 방법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審理錄》에 나타나는 자살사례들에는 그 장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자살자가 택한 방법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편이다. 자살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목을 매어 죽는

방법(縊死)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한다. 하지만 자살 위장을 제외하면, 여성은 목을 매어 죽는 방법보다 음독자살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자살 위장에 있어서는 목을 매어 죽은 것으로 가장하는 것이 가장 많았는데, 자살 위장이 비교적 손쉽고 그 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낮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0)</sup> 음독자살 또한 종종 사용되는 자살 위장의 방법이었으나, 당시 은비녀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음독 여부를 판명할 나름의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장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살에 대한 논의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3. 남성의 자살 - 자살자에 대한 멸시

모든 자살자는 탈주자, 변절자이다.

- 나폴레옹

자살, 그것은 국가에 반역하는 과오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審理錄》에 나타나는 남성 자살 사건을 살펴보면, 자살이 아닐 것이라는 일말의 가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자살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때, 출발점은 그 사건이 ‘자살이냐, 타살이냐’하는 지점이었던 것이다. 물론 자살을 둘러싼 사건을 수사할 때, ‘그 죽음이 자살인가 타살인가’하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살자가 남성인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남성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 중에, 시작부터 자살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 사건은 단 8건에 그치고 있다.<sup>31)</sup> 그나마 이 중 2건은 가해자

28)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9)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0) 당시 수사 지침서로 사용되던 《無冤錄》에는 목을 매어 자살할 때와 그것을 위장할 때의 차이점이 명시되어 있다.

(원인 제공자)를 찾을 수 없는 사건이다.<sup>32)</sup>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타살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살은 ‘일반적인 남성’이 저지를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진천 박사회의 옥사<sup>33)</sup>가 이를 잘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눈에 물을 대는 일로 다투다가 박사회가 이처상을 때려 3일 만에 죽게 한 사건인데, 실인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다. 그래서 시체에 대한 검사도 네 차례나 시행되었다.

초검에는 구타당하여 숨이 막힌 것이라 하고, 복검에는 상처를 입은 것이라 하고, 삼검에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진 것이라 하고, 사검에는 구타를 당한 것이라 하였다.

해당 지방관은 범인이 도망쳤으니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고, 범인이 자살로 사건을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간수를 먹었다고 보고했다. 형조에서는 이웃집에서 준 떡이 식중독의 빌미가 되었고 시친(屍親)이 쌀뜨물을 먹인 것은 독을 제거하려는 것이기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했다. 그러나 정조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타살이라고 규정하였다.

…대저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인데, 독약을 마시고 죽거나 목을 매어 죽거나 칼로 찢러 죽거나 간에 이것이 어

떻게 사람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더구나 이처상은 가족이 있고 문제도 없는 사람으로서 독약을 마시고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고 보면, 아무리 집에 간수를 감추어 놓고 호주머니에 비상을 넣어 두었기로서니 애당초 어찌 한 국자의 독극물인들 떠다 마실 리가 있겠는가…

즉 범인들이 살인죄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부인인 방 여인을 중용해 남편이 독약을 먹었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조의 말에서 나타나듯이 자살은 ‘사람의 상정’에 반하는 일이며, ‘가족도 있고 문제도 없는 사람’은 죽을 리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남성과 관련된 자살 사건의 경우, 대부분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정황근거를 살펴보기 보다는 시체에 나타난 증거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sup>34)</sup> 이러한 인식들이 바탕이 되어, 자살했다고 인정되는 판결보다는 자살로 가장한 사건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더 많았다.<sup>35)</sup>

조선 후기, 적어도 《審理錄》에 드러나는 누양스를 살펴보면, 자살한 남성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위정자들에게 남성의 자살은 이해가 가지 않는 매우 편협하고 용기 없는 행위에 불과했다. 《審理錄》에 나타나는 남성의 자살을 두고 칭송하는 경우는 물론 없으며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경우조차 없다. 오히려 남성의 자살은 정황에 따라 ‘독기’를 부린 ‘무지한 상놈의 짓’<sup>36)</sup>으로 여겨지거나 혹은

31) 중부 박중근의 옥사 (1권 30-32쪽), 성주 신정신의 옥사 (2권 5-6쪽), 서부 오찬주 등의 옥사 (2권 55-56쪽), 철원 채성발 등의 옥사 (2권 78쪽), 양양 이해인의 옥사 (2권 78-81쪽), 경주 강웅이의 옥사 (2권 82-83쪽), 평산 이태봉의 옥사 (4권 153쪽), 직산 최윤삼의 옥사 (4권 213쪽),

32) 중부 박중근의 옥사는 곤장을 맞던 중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건이고, 직산 최윤삼의 옥사는 옥중에서 음독자살한 사건이다.

33) 3권 105-109쪽.

34) 목을 맨 흔적, 은비녀로 확인한 독극물의 흔적, 목을 매단 곳의 상태, 자살의 흔적 외에 구타나 자상과 같은 다른 실인의 흔적과 같은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無冤錄》을 근거로 하고 있다. 《無冤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김호, 해제: 『신주무원록』과 조선 전기의 검시, 신주무원록, 사계절; 2003. 13-41쪽.

장윤희, 《增修無冤錄諺解》의 자료적 특성과 언어,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537-553쪽.

35)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 자살 사건의 거의 절반이 자살 위장으로 판결이 났다.

‘못난’ 짓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영광 대수철의 옥사<sup>37)</sup>가 좋은 예가 된다. 대수철의 처가 최창석의 아들 최관이와 간통을 하자 대수철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최창석이 칼을 빼앗다가 상처를 입어 35일 만에 죽은 사건이었다. 형조는 대수철을 두고 ‘스스로 칼로 찔러 죽으려고 한 못난 사내가 어찌 남을 찌를 배짱이 있었겠습니까.’라며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계사를 올렸다. 종성 오 조이(召史)<sup>38)</sup>의 옥사<sup>39)</sup>도 마찬가지로의 경우다. 이 사건은 오 여인의 사위 김제몽이 소 빌린 값을 독촉하자 오 여인이 화가 나서 김제몽의 처이자 자신의 딸인 엄 여인을 숨기고, 오 여인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협박하니 김제몽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사건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해당 지방관은, 김제몽이 협박에 ‘겁을 먹었고 그저 꺾박하여 장모를 죽였다는 ‘죄를 면하려고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보았다.

서부 오찬주의 옥사<sup>40)</sup>에도 남성의 자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이어진다. 이 사건은 최성휘가 빚을 갚지 않아 오찬주와 싸우고 또 김 여인까지 말싸움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최성휘가 목을 매어 죽은 사건이다. 형조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실인은 목매어 죽은 것이 확실하고 ‘오찬주와 김 여인이 비록 구타한 일은 없었으나 스스로 목을 맨 원인이 사실 싸우고 말다툼한 데에 있으니, 온전하게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참작하여 처벌하겠습니다.’라고 계사를 올렸다. 그러나 정조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내렸다.

이 옥사는 죽은 최성휘가 가령 남에게 구타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이미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것이니, 사형에 처하는 형률은 적용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오찬주와 다투고 저녁에 김 조이와 다투고 나서는 다음 날 아침에 홀연히 ‘여자에게 구타를 당했으니 살아 있으면 뭐 하겠는가’라는 말로 그의 처와 수작하였다. 이어 바로 괜히 목을 매었다. 최성휘의 일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면 망녕이 든 것이니, 부질없이 죽었다고는 할 수 있어도 피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두 죄수를 여러 달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은 실로 불쌍하고 측은한 일이라 하겠다. 경들이 비록 완전히 무죄로 하는 것을 결정하기 어려운 단서로 삼고 있으나, 위협하고 꺾박하여 죽게 만든 죄율이든 혹은 구타하였으나 상해하지 않은 죄율이든 모두 이 사건에 합당하지 않다. 오찬주와 김 조이 등을 모두 용서하여 풀어 주라.

공주 강옹이의 옥사<sup>41)</sup>는 남성 자살자가 자살 대신 택했어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강옹이라는 어린 남자 아이가 오 여인의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기고 돈을 훔쳐 갔는데, 오 여인의 남편 이경증이 분하고 부끄러워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이 사건을 두고 본도나 형조의 계사 모두, 강간과는 다른 것인데 이것이 부끄럽고 분하다고 목을 맨 것이니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고했다. 정조 또한 그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36) 중부 박중근의 옥사 (1권 30쪽). 곤장을 맞던 중에 칼을 빼어 자살하려 한 사건인데, 심리하는 관료들이 모두 독기를 부린 변괴라고 하여 대시참(待時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논하고 있다. 결국엔 ‘무지한 상놈의 짓’이니 사형을 감해 세 차례 형신 후 정배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37) 2권 91쪽.

38) 한문으로는 召史이지만 이는 이두식 표기로 읽을 때는 ‘조이’로 읽는다. 현재 그냥 소사로 읽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서는 조이로 표기하기로 한다.

39) 2권 134-135쪽.

40) 2권 55-56쪽.

41) 2권 82-83쪽.

이경증이 자살한 것은 분명 부질없이 죽은 것이다. 그런데 자신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죄과로 돌리고 사형에 처하는 형률로 처결하는 것은 법문에서 구해보건대 너무도 합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가령 강웅이가 참으로 그의 처 오 여인을 몰래 강간한 자취가 있다 하더라도 이경증의 분하고 원통한 마음으로는 강간한 자리에서 강간한 사내를 직접 칼로 찢어 죽이더라도 안 될 것이 없을 터인데, 이경증은 이와 반대로 쓸데없이 의심을 일으키고 부질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경증이 자살한 것은 부질없는 것이었다. 정조는 이경증이 자신의 분노와 원통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해소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한심하게 보았다. 만약 강웅이가 이경증의 부인을 강간했다면, 이경증은 강웅이를 죽였어야 했다.<sup>42)</sup>

《審理錄》에 드러나고 있는 조선 후기 위정자들의 인식에서, 자살은 일반적인 남성이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며, 자살을 한 남성은 무식하거나 혹은 유약한 ‘못난 사내’로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비슷한 시기(1797년) 편찬되었던 《五倫行實圖》<sup>43)</sup>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행실도에는 당대에 숭앙을 받을 만한

행적이 있는 인물들이 수록된다는 점에서 이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孝子圖>에 실린 내용 중에는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려 했던 인물이나<sup>44)</sup>,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사형을 받으려 했다는 인물<sup>45)</sup> 또는 부모의 병간호를 위해 손가락을 잘랐다는 인물<sup>46)</sup>만이 있을 뿐, 자살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兄弟圖>, <朋友圖>는 말할 것도 없다.

《五倫行實圖》 <忠臣圖>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살의 사례는 총 7건이다.<sup>47)</sup> 그 내용은 모두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다. <忠臣圖>의 사례 35건 중 자살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28명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살이 아닌 타살로 생을 마감한다.<sup>48)</sup> 그리고 <忠臣圖>의 자살은 뒤에 언급될 <烈女圖>의 자살에 비한다면 그 극적인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sup>49)</sup> 굳이 <烈女圖>와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자살한 충신들은 대부분 전장에서 비장한 죽음을 맞이하는 <忠臣圖>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50)</sup> 오히려 <忠臣圖> 속에서도 충신이 아닌 ‘가족’의 자살이 틈틈이 등장한다.<sup>51)</sup> 충신 그 이외의 인물

42)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조선시대엔 강간현장에서 간부(奸婦)와 간부(奸夫)를 죽이는 것에 대해 죄를 묻지 않았다.

43) 여기서 인용하는 《五倫行實圖》는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2006년에 출간한 역주본을 기본으로 했다.

44) <孝娥抱屍>, 53-57쪽.

45) <吉刪代父>, 146-153쪽.

46) <石珍斷指>, 222-226쪽.

47) <王蠋絕脰>, 250-254쪽; <龔勝推印>, 273-278쪽; <李業授命>, 279-284쪽; <劉翰捐生>, 337-342쪽; <尹穀赴池>, 361-365쪽; <枋得不食>, 373-378쪽; <蝦蟇自焚>, 390-394쪽.

48) 광해군대에 간행된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忠臣圖>에도 전체 99건 중 자살은 14건에 불과하다. 세종대에 간행된 《三綱行實圖》 <忠臣圖>에는 전체 110건 중 자살이 25건 수록되어 있다.

49) <烈女圖>의 열녀들은 마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팔 다리가 잘려나가는 중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다.

50) <忠臣圖>의 자살자가 모두 문신이라는 점도 이 강렬함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51) 윤곡의 이야기(<尹穀赴池>, 361-365쪽)에서는 송나라 사람인 윤곡이 원나라의 침공을 받아 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일문(一門)이 모두 못에 빠져 죽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 보안불화의 이야기(<普顏全忠>, 395-400쪽)는 원나라 사람인 보안불화가 명군(明軍)에게 잡혀서도 굴하지 않고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뒷부분에 ‘그 아내 아로진이 또한 아들을 안고 우물에 빠질 때에, 딸과 첩과 손녀와 두 아우의 아내가 각각 어린아이를 안고 종들까지 모두 따라 빠져 죽었다’라는 추가 서술이 있다.

들-딸, 첩, 손녀, 아우의 아내, 어린아이-의 자살은 한 충신의 이야기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했지만, 정작 충신의 자살은 끝까지 싸우다 죽은 '타살'과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했다.

《五倫行實圖》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시대의 남성들에게 사사로운 이유로는 물론이고 충과 같은 대의명분을 위한 죽음에 있어서도 자살은 그리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었다. <忠臣圖>에 등장하는 자살자들이 서술에서나 그림 상에서나 모두 문약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살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고통을 감내해가며 저항하는 것이 '붉은 마음(丹心)'을 제대로 보여주는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목적이 아무리 대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임에도 자살은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만약 대의명분마저 없다면, 자살은 부질없고도 무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 4. 여성의 자살 - 성품(性稟)과 주체 혹은 떨시와 찬탄

자살은 부패한 민족들에게 공통적이다.  
자신의 최후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혼의  
엄격함을 보여주기보다 본성의  
감퇴를 보여준다. - 샤토브리앙  
인생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희망마저 없을 때,  
삶은 치욕이고 죽음은 의무가 된다. - 볼테르  
그렇다면 여성의 자살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을까. 《審理錄》을 살펴보면 여성의 자살은 남성과는 달리, 그 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자살했다는 사실이 남성에 비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발견된다.<sup>52)</sup> <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자살 사건은 남성의 그것보다 수적으로 훨씬 많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죽음에서는 시신에 나타나는 증거뿐만 아니라 자살하게 된 동기, 즉 정황증거가 매우 중요했다. 남성들의 자살 사건을 두고는 목을 맨 흔적이나 장소, 은비녀에 나타나는 독소의 증거와 같은 가시적인 물증들이 논의의 중심에 있던 것과는 대비되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살의 원인을 논할 때, 대부분의 경우 '성품'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남성의 경우에도 개인의 성품이 언급되기는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성품이 단지 개인의 성품이 아니라 '여성의 성품'으로 일반화되어 논의되었다. 단천에 살던 이용득이 가을 옷을 제때에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인을 꾸짖자, 부인이 스스로 목을 찢러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sup>53)</sup> 이를 두고 이용득의 부인 김 여인의 성격이 '본래부터 편벽한 것'이라고 형조에서 보고했다. 정조 또한 '김 여인이 지아비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마음속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목을 찢르고 만 것은 여인의 편벽된 성품 탓'이라고 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비단 한 둘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재령 이경휘의 옥사는 이경휘가 과거의 일로 양심을 품고서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핍박하여, 최 여인을 비롯한 7명의 가족 전

52) 그러나 이 사실은 현대에 나타나는 자살의 양태와는 차이가 있다. 유럽을 대상으로 한 자살 연구 결과,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자살률이 높았다. 이는 어느 연령대에서나 마찬가지였다(토마스 브로니쉬, 이재원 옮김, 자살, 이끌리오; 2002, 34쪽). 이것은 현재 한국의 경우도 그러하다. 2000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총 3,898명(인구 10만명 당 25.7명), 여성은 총 1,666명(인구 10만명 당 10.1명)으로 심한 편차를 보인다(오진경 · 조영태 · 김찬엽, 위의 글, 195쪽). 물론 이 연구들은 현대의 자살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적어도 《審理錄》에 남성보다 여성 자살자가 많다는 사실이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일부 증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

53) 2권 48쪽.

체가 모두 물에 빠져 죽은 보기 드문 사건이다.<sup>54)</sup> 여기서도 정조는 사건의 참혹함을 한탄하고 죽은 이들을 동정하면서도 ‘여자가 아무리 성품이 편벽되다고 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남부 중 삼한의 옥사<sup>55)</sup>에서도 삼한의 처 구월이 자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삼한에게 죽임을 당한 것인지를 논하면서, ‘대개 여자의 성품은 대부분 편협하고 급하여 독기가 가슴 속에 가득 차면 당장 죽기를 결심하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조의 ‘여자는 성품이 나약한데 어떻게 쉽사리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정상참작’을 하지 않은 고지식한 생각이라고 평하였다.<sup>56)</sup> 또 박민세의 옥사<sup>57)</sup>에서는 유 여인이 자살한 것을 두고 ‘꼭 막힌 소견은 여자의 본성인 만큼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안동 김협상의 옥사는 부인 김명단이 삼관을 제대로 삶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협상이 끓는 젓물을 부인에게 부어버리자 김명단이 자살한 사건이다.<sup>58)</sup> 정조는 김명단의 자살 여부를 논하면서 ‘문드러져 죽든 목매어 죽든 남에게 목 졸려 죽든 간에 김 여인의 죽음이 이미 제 남편과 언쟁을 한 뒤에 있었고 보면,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논의 방식은 때로 판결 자체를 뒤집기도 했다. 금성 안광금의 옥사가 바로 그 예다.<sup>59)</sup>

안광금의 처 김 여인이 시아비에게 순종하지 않자 구타하여 죽게 한 뒤에 새끼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가장한 사건이라고 해당 지방관에 의해 최초 보고가 되었다. 그러나 형조에서는 시체를 다시 파내어 검사한 후에, 지아비가 따귀를 때리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인데 처가 목을 매달은 것은 ‘독한 성질을 견디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정조 또한 ‘김 여인이 처음에 시아비에게 공손하지 않더니 결국엔 편협하고 좁은 성품을 감당하지 못하여 함부로 목을 매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보았다. 결국 수사 결과 ‘살인 후 자살로 위장’한 것이었던 사건이 자살로 판결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 과정에서 남성의 자살 사건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수사 방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無冤錄》과 같은 수사 지침서에 근거한 구체적 실인이나 증거의 제시도 없이 정황증거나 개인의 성격만으로 판결이 바뀌고만 것이다. 특히 형조의 중간보고에 ‘죽은 때는 계춘(季春) 보름 경인데 시체를 파내어 검사한 때는 6월 그믐께였으니, 실인을 분명히 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살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자살로 결론이 났다.<sup>60)</sup> 순천 김삼남의 옥사<sup>61)</sup>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여성의 그 태생적인 ‘성품’ 때문에 ‘그럴만한 일’, 혹은 ‘지극히 쉬운 일’로 여겨지던 여성의 자

54) 2권 218-221쪽.

55) 2권 267-269쪽. 이 옥사의 내용은, 삼한의 처 구월이 다른 이와 정을 통하였다고 의심하여 삼한이 구월을 칼로 찔러 죽인 것이다.

56) 형조의 논의도 결국 여성의 태생적 성품을 논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를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57) 2권 300-301쪽. 박민세가 군정(軍丁)에 대리로 편입되어 아내를 잃었다는 이유로 유 여인에게 감정을 품고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싸움을 걸자, 유 여인이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는 것이 사건의 내용이다.

58) 3권 24쪽.

59) 2권 150-151쪽.

60) 물론 안광금이 완전 무죄로 석방되지는 않았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죄로 인정을 받았다..

61) 3권 250-251쪽.

살 또한 남성의 자살처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죽음을 '선택'했던 여성들 또한 어리석고 편협하다는 남성 자살자에 대한 평가와 별 다를 것 없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앞서 살펴봤던 금성 안광금의 옥사를 다시 살펴보면, 자살로 가장한 사건이 자살로 결론이 바뀌면서 김 여인의 죽음(자살)은 '이러한 죽음이야 말로 쓸데없이 죽은 것'이라고 냉소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김제 유몽골의 옥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냉소적인 시선이 유지되고 있다.<sup>62)</sup> 이계상이 돈을 잃어버리고 유몽골을 의심하자 유몽골이 이계상에게 욕을 했다. 이에 이계상의 처 박 여인이 분하고 억울하게 여겨 비소를 마시고는 유몽골의 집에서 죽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담당할 어사는 이계상이 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박 여인의 죽음은 그저 '부질없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렇게 냉대를 받던 자살이 높이 칭송 받고 위정자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도 있었다. 남성 자살자가 '忠'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조금이나마 냉소적인 시선을 거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성들에게는 '烈'이라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했다. 순천 조이중 등의 옥사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63)</sup> 이 사건은 남성들 간에 일어난 구타 및 살인 사건이다. 그런데 살인을 당한 이양택의 처 허 여인이 남편이 죽었다는 이유로 자결을 했다.<sup>64)</sup> 사실 엄밀히 말하자

면 살인 사건과 허 여인의 자살은 별개의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범인 한 사람 때문에 무고한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허 여인의 자결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 간다. 정조는 '먼 지방의 시골 여인으로 이러한 정절이 있으니, 크게 감동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형조의 청을 받아들여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기 위해 은전을 내렸다.<sup>65)</sup> '남쪽 지방 사람으로서 칭찬하고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고, 본고을 선비들은 단자(單子)를 울리기 까지'했다는 내용도 보인다. 이처럼 자살이라 할지라도 '烈'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옥사에 대한 논의의 화제를 바꿀 정도로 의미 있는 일이 되었던 것이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웅천 이창범의 옥사<sup>66)</sup>, 충주 박승문의 옥사<sup>67)</sup>, 여주 강취문의 옥사<sup>68)</sup>, 동부 박호민의 옥사<sup>69)</sup> 등 《審理錄》에 등장하는 여성 자살 사건의 77.4%가 이와 비슷한 경우였다.<sup>70)</sup> 특히 충주에 살던 박승문에게 강간을 당한 후 자결한 여성에 대해 언급하는 해당 지방관의 보고와 이 사건에 대한 정조의 평은, '조건을 만족시킨 자살'이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감동'을 안겨주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감동어린 말 속에서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살짝 엿볼 수 있다.

눈물을 머금고 고별한 말은 너무나 비장하고

62) 2권 89-90쪽.

63) 1권 263-266쪽.

64) 허 여인이 택한 자살의 방식은 단식이었다.

65) 그런데 거의 모든 경우, 바로 정표를 내려 정절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리를 파견하여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그 조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건 이전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추측해 볼 수 있다.

66) 2권 113-115쪽.

67) 3권 93-94쪽.

68) 3권 239-241쪽.

69) 4권 236-237쪽.

70) 자살 사건 31건 중 24건. <표 1> 참조.

조용히 죽어 간 절개는 더없이 탁월합니다.

대저 시골이란 양반과 상민을 구별할 것 없이 정숙한 여자가 포악한 자들에게 욕을 당하거나 나물을 캐다가 한번 끌려가기라도 하면 갑자기 바람을 피운다고 손가락질을 받아 온갖 오명을 쓰게 된다. 그러면 강간을 당하고 안당하고를 막론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모함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씻기 어려운 것이어서 방 안에서 목을 매어 자결하기로 맹세하게 되니, 그 일은 어둠에 묻혀 밝혀지지 않고 그 심정은 잔인하고도 비장하다. 집으로 돌아와 식구들에게 호소해 봤자 더러는 눈물을 흘리며 방문을 나서고 더러는 남 보듯 하면서 다른 데로 가 버리니, 적적한 빈 방에서 수치와 분노가 가슴 속에 교차되어 구차하게 살아 보려 하여도 참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포상의 은전은 비록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요컨대 몸을 맑히고 지조를 지킨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님에도 검관은 스스로 불러들인 화간이라고 하였으니 어찌하여 남의 미덕을 이루어 주는 일을 그리도 달갑잖아 하는가.

위정자들도 인정하듯이 ‘나물을 캐다가 한번 끌려가기’만 해도 오명을 쓰게 되고 가족들마저 그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사는 것은 ‘구차’한 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 궁지에 몰린 여성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烈’의 추구가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적인 것일 수도 있었음을 의미하며, 그 강요된 표현 방식이 자살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남성의 대의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忠’을 위한 자살도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여성의 자살에 비할 것은 아니다. 잠시 언

급했었던 《五倫行實圖》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총 35건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충신도’ 부분에서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가 7건이었던 반면에, 총 37건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열녀도’ 부분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가 13건에 이른다. 남성에게 있어 자살은 대의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했던 반면, 여성들에게 있어 자살은 매우 강렬하고도 ‘적극적’인 주체적 행위로 인식된 것 같다.<sup>71)</sup>

이것은 자살이 아닌 다른 적극적 행위가 여성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진 김 조이의 옥사를 살펴보자.<sup>72)</sup> 김 조이는 안 여인이 자신의 행실에 대해 모함한 것에 분노하여 칼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에 정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뺏속에 사무치는 억울함은 정숙한 여인이 음란하다는 무고를 당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김 조이의 살인에 대해 ‘이는 진실로 열혈 남성으로서도 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또 소견 좁은 연약한 여인이 울분을 숨기고서 스스로 목매거나 빠져 죽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극찬했다. 결국 김 조이는 특별 방면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일은 정조의 말대로 여성으로서 하기 힘든 일이었다. 소견이 좁고 연약한 ‘본성’을 가진 여인이 자살하는 것은 태생적인 한계 내에서 그나마 적극적인 행위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 ‘칭송 받는 자살’도 조건이 있었다. 적절한 타이밍과 정확이 필요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봤던 김제 유몽골의 옥사와 같이, 그저 남편을 따라 죽는다고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정해져 있는 타이밍과 정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살은 그저 ‘부질없는 것’이 될

71) 광해군대에 간행된 《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이런 현상을 더욱 자세히 보여준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수록 인물 전원이 모두 동국인(東國人), 즉 한반도 내 거주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 주로 남성이 수록된 ‘효자도’에는 자살자가 전무하고 ‘충신도’에도 자살자가 몇 안 되는 반면에(99건 중 14건), ‘열녀도’에는 자살한 여성의 사례가 749건 중 258건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정일영, 광해군대 『東國新續三綱行實圖』 연구,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16-22쪽.

72) 4권 138쪽.

뿐이었다. 제천 이기대의 옥사가 그 ‘타이밍’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다.<sup>73)</sup> 이 사건은 이기대가 노 여인에게 억지로 장가를 들려고 하자 노 여인이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간수를 마시고 즉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두고 해당 지방관은 길목에서 희롱한 것이지 겁탈한 것도 아니고 혼인을 청한 것도 위협과는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정조는 노 여인의 죽음이 정조(貞操)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문을 제기했다.

…대저 노 여인의 죽음이 정조(貞操) 때문이라면 정조 때문이기는 하나, 옷자락을 잡히던 그 날에는 죽지 않고 사주단자를 보내 온 그 때에 와서야 결행한 것은 죽을 명분을 제대로 찾아서 죽은 것인지 모르겠다. 일이란 좋은 점을 살려 주는 것이 고귀한 법인데, 조정에서 비록 구실을 찾으려 하지는 못할망정 이로 인하여 곧바로 고의로 폄박하여 죽인 죄를 매긴다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기대의 죄는 오로지 사주단자를 억지로 보낸 데 있고, 중매 자체는 부모들도 막지 않은 것이다. 야합으로 만난 잘못을 깊이 후회한 나머지 이처럼 예법을 갖추려는 거조가 있었다는 것은 이기대에게 있어서는 예의를 알았다고 하기에 충분하여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옥안을 성립하여 사형 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논의할 바가 아니다…

결국 노 여인은 정표를 받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한다. 연기 홍명렬의 옥사도 비슷한 경우다.<sup>74)</sup> 이 사건은 양 여인이 홍명렬에게 강간

을 당했다는 이유로 단식을 하다가 5일만에 피를 토하고 죽은 사건인데, 해당 지방관의 계사에서는 옥을 당한지 1년이 지났고 화간인지도 분별할 수 없다고 했다. 정조 또한 시기가 늦춰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가령 양 여인이 진정으로 부끄러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실로 겁탈당한 즉시 목숨을 끊어 본심을 드러내기에도 겨를이 없었을 터인데, 지금까지 숨기고 묵묵히 있으면서 오래도록 지체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홍명렬이 취중에 뒤를 밟아 찾아간 것이 비록 ‘새로운 분노를 도발하여 잡자던 불기를 불리일으키는 빌미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전에는 강제로 겁탈하고 뒤에는 옥을 보인 것인데, 강간과 모욕은 경중이 어떠한가…

홍명렬은 양반이라는 이유로 더 중한 죄를 받아야한다고 논의가 되었지만, 양 여인은 노 여인과 마찬가지로 정표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강간을 겨우 모면한 후 23일 만에 약을 먹고 죽은 함평 김 여인의 경우는 달랐다.<sup>75)</sup> 이 사건을 두고 정조는 ‘처음에는 이미 몸을 깨끗이 하였고 결국에는 능히 죽음으로써 마무리 하여 한 가닥 정절로 양반의 본색을 잃지 않은 자이니, 매우 가상하다’라고 칭송하였다. 결국 김 여인에게는 은전이 내려졌다. 20일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지만 집안이 가난한데 자기 남편과 어린 자식이 마음에 걸려 시간이 끌었음을 감안<sup>76)</sup>한 것이다.<sup>77)</sup>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간을 당했는지 당하지

73) 2권 304-305쪽.

74) 4권 214-215쪽.

75) 1권 119-120쪽.

76) 이런 시각은 열녀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관련이 있다.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남편을 따라 죽는 열녀들을 보며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움이 열녀들의 죽음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아직 그들이 봉양해야 할 부모, 그리고 길러내야 할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죽음을 선택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옥이나 박지원의 열녀전, 정약용의 ‘열부론’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이혜순, 열녀전의 立傳意識과 그 사상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위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서울: 월인; 2002; 임유경, 이옥의 열녀전 서술방식과 열 관념.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위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서울: 월인; 2002. 등을 참조할 것.

않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면천의 배 여인은 이유복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는데, 그에 대한 수치와 분노로 13일만에 목을 매어 죽었다.<sup>78)</sup> 이미 앞에서 몇 가지 예에서 볼 수 있었듯, 배여인이 정절을 지킨 예로 칭송 받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선 정조의 판부를 살펴보자.

이유복이 정절녀를 더럽히려고 한 죄는 우선 차치하고, 배 여인처럼 우뚝한 지조는 옛날에도 알려진 일이 드물다. 그 몸이 더럽혀지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결행하였으니 어찌 더럽혀지고 나서 죽어 그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보다 열 배나 더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 몸이 ‘더럽혀’지면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배 여인이 더욱 칭송을 받는 것은 ‘더럽혀지지도 않았는데’ 자살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논평은 영평 최후씨의 옥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79)</sup> 칭송의 이면에는 ‘더럽혀진 여성’의 살 길은 자살 밖에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이 ‘깨끗함’(혹은 ‘더럽혀짐’)에 대한 강박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죄를 변호해주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웅천의 김이단이라는 18세 여자가 사족(士族)인 이창범에게 강간을 당할 뻔 하고 그것이 부끄럽고 분하여 목을 매어 죽었다.<sup>80)</sup> 그런데 이 사건에서 김이단이 이창범

에게 강간을 당했는가 당하지 않았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해당 지방관의 계사와 형조의 계사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조는 김이단이 ‘억지로 겁탈당하는 것이 욕된 일인 줄을 잘 알고는 목숨을 끊기를 마치 즐거운 곳으로 나아가듯이 하였으니’ 이창범이 그 뜻을 빼앗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강간 미수를 주장하였다. ‘깨끗함’에 대한 강박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 다음의 말이다.

강간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명백히 알면서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결정하기에 급급하여 강간이 이루어진 것으로 몰아간다면, 이 또한 자세하고 분명하는 처리하는 정사에 흠이 되는 것이요, 김이단의 정조를 더럽히기에 충분한 것이다.

결국 이런 논리로 이창범은 사형을 감하여 정배되었다. 이미 죽은 여인의 정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강간 미수로 죄목을 설정하여 죄인의 형을 감해준 것이다. 비록 간통이라 하더라도 자살을 종용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sup>81)</sup> 정작 더럽혀진 혹은 더럽혀질 뻔한 여성들에게 그들이 권장했던 것은 자살이었다.

이처럼 사건의 종류만으로 볼 때는 ‘강간으로 인한 자살’로 분류되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자살이 가치평가를 받게 될 때 ‘자살의 진정한 의도’가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논의의 핵심은 가부장제

77) 웅천 이창범의 옥사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정조는 자살자 김이단의 정조(貞操)를 인정하고 있으나 본도의 계사는 ‘삼을 삼고 밥을 지었으니, 처음에는 반드시 죽으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고 이창범의 처가 악행을 부린 뒤에야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자살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본문의 다른 예들과 함께 ‘타이밍’과 ‘정황’의 모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권 113쪽-114쪽).

78) 5권 166-167쪽.

79) 5권 315-316쪽. ‘정숙한 여인이 강포한 자에게 욕을 당하고는 죽음을 결심하여 목숨을 끊는 경우를 이와 같은 옥안에서 많이 보지만, 영평의 유학(幼學) 이경유의 딸과 같이 우뚝하고 늠름하며 차분하고 강개한 경우는 일찍이 자주 들어보지 못하였다. 더구나 몸이 이미 더럽혀지지 않았는데도 집으로 돌아가듯이 삶을 버리고 죽음을 택한 경우이겠는가.’

80) 2권 113-114쪽.

81) 전주 정대봉의 옥사(4권 274-275쪽).

의 유지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똑같이 강간을 당한 후(혹은 강간 미수 사건을 겪은 후) 바로 자결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남겨질 남편과 어린 자식이 걸렸다는 점을 정상참작 하여 포상을 했던 것이다.<sup>82)</sup>

### 5. 자살에 대한 지배계층의 모순적 태도

*자살은 없다. 살해만이 있을 뿐이다. -  
트리올레*

남성 자살자에 대한 냉소 어린 시선과 대조적인, 여성의 자살에 대한 포상과 찬탄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그리고 특정한 맥락 속에서만 여성의 자살이 칭송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審理錄》에 나타나는 자살에 대한 인식은 일면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 이 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번 장에서는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이용해보기로 한다. 이 자료 속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곤 했던 자살을 칭송하는 모습과, 반대로 칭송했던 자살을 만류하는 모습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순은 자살이 단지 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기록은 약간 범위를 넓혀 영조대의 기록까지 포함하도록 한다.

앞서 정황에 맞는 여성의 자살은 지배층 남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음을 살펴보았었다. 또 때로는 ‘수동적인’ 자살이 아니라 ‘능동적인’ 살인을 했을 때 더 극찬을 받기도 했다. 그만큼 정절에 대한 남녀 모두의 강박관념이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烈에 대

한 절대적 숭앙과 강박관념이 ‘절대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영조의 딸 화순옹주의 종사다. 다음은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화순 옹주의 졸기다.

화순옹주가 졸(卒)하였다. 옹주는 바로 임금의 둘째 딸인데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동복 누이동생이다.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에게 시집가서 비로소 권문을 나갔는데, 심히 부도(婦道)를 가졌고 정숙하고 유순함을 겸비하였다. 평소에 검약을 숭상하여 복식에 화려하고 사치함을 쓰지 않았으며, 도위(都尉)와 더불어 서로 경계하고 힘써서 항상 깨끗하고 삼감으로써 몸을 가지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진 도위와 착한 옹주가 아름다움을 짝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도위가 졸하자, 옹주가 따라서 죽기를 결심하고,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그 집에 친히 거동하여 미음을 들라고 권하자, 옹주가 명령을 받들어 한 번 마셨다가 곧 토하니, 임금이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는 슬퍼하고 단식하면서 돌아왔는데, 이에 이르러 음식을 끊은 지 14일이 되어 마침내 자진(自盡)하였다. 정렬(貞烈)하다. 그 절조(節操)여! 이는 천고(千古)의 왕희(王姬) 중에 있지 아니한 바이다. 조정에 받들어 위로하고 정후(庭候)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부인의 도(道)는 정(貞) 하나일 뿐이다. 세상에 붕성지통(崩城之痛)을 당한 자가 누구나 목숨을 끊어 따라가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겠는가마는, 죽고 사는 것이 또한 큰지라, 하루아침에 목숨을 결단하여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는 이는 대개 적다. 그러나 정부(貞婦)·열녀가 마음의 상처가 크고 슬픔이 심한 즈음을 당하여, 그 자리에서 자인(自引)하는 것은 혹시 쉽게 할 수 있지만, 어찌 열흘이 지나도록 음식을 끊고 한 번 죽음을 맹세하여 마침내 능히

82) 이 ‘정상참작’에는 사건 자체의 정황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도 반영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가뭄이 심하다거나 하면 원한을 풀면 ‘단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주 정대봉의 옥사(4권 274-275), 안동 이석의 옥사(5권 195쪽)나 풍덕 김유봉의 옥사(5권 143쪽) 등을 참조할 것.

성취하였으니, 그 절조가 옹주와 같은 이가 있겠는가? 이때를 당하여 비록 군부(君父)의 엄하고 친함으로서도 능히 감동해 돌이킬 수 없었으니, 진실로 순수하고 굳세며, 지극히 바른 기개가 분육(賔育)이라도 그 뜻을 빼앗지 못할 바가 있지 아니하면 능히 이와 같겠는가? 이는 진실로 여항(閭巷)의 필부(匹婦)도 어려운 바인데, 이제 왕실의 귀주(貴主)에게서 보게 되니 더욱 우뚝하지 아니한가? 아! 지극한 행실과 순수한 덕은 진실로 우리 성후(聖后)께서 전수(傳授)하신 심법(心法)이므로, 귀주가 평일에 귀에 짓고 눈에 뵈는 것을 또한 남편에게 읊었던 것이다. 아! 정렬하도다. 아! 아름답도다.”<sup>83)</sup>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순옹주는 영조 34(1758)년에 14일 동안 단식한 끝에 죽었다. 음식을 끊은지 7일 후 영조가 그 소식을 듣고 직접 거동하여 음식을 권했다는 기록이 있지만<sup>84)</sup> 화순옹주의 뜻을 바꾸지 못했던 모양이다. 당시 영조의 상심이 컸는지 정작 화순옹주에 대한 정표 같은 것은 바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정조 7(1783)년 화순 옹주의 마을에 정문을 세우면서 정조는 다음과 같이 하교했다.

화순귀주(和順貴主)의 마을 어귀에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사람이 제 몸을 버리는 것은 모두 어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가 그리하였을 경우에는 충신이 되고 자식이 그리하였을 경우에는 효자가 되고 부녀자가 그리하였을 경우에는 열녀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어미가 지아비를 따라 죽는 것은 교훈으로 삼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식이 생명을 잃은 것을 성인이 경계하였지만 거상(居喪)을 끝내지 못하고 죽어도 효도에 지장이 없고 보면 지어미가 지아비를 위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이와 다르겠는가? 부부의 의리를 중

히 여겨 같은 무덤에 묻히려고 결연히 뜻을 따라 죽기란 어렵지 않는가, 매섭지 않은가? 여염의 일반 백성들도 어렵게 여기는데 더구나 제왕의 가문이겠는가? 백주(栢舟)를 읊은 시는 겨우 《詩經》에 나타나 있으나 죽음으로 따라간 자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보면 우리 화순귀주는 매우 뛰어났다고 하겠다. 월성도위(月城都尉)의 상(喪)에 화순 귀주가 10여 일간 물과 음식을 먹지 않다가 죽었는데, 그때 선대왕께서 그의 집에 가시어 위로하면서 음식을 권하였으나 끝내 강권하지 못하였다. 어질고 효성스러운 화순귀주가 임금과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따라야 한다는 의리를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그의 한번 정한 뜻을 바꾸지 않았던 것은, 정말 왕명을 따르는 효도는 작고 남편을 따라 죽는 의리는 크기 때문이었다. 아! 참으로 매섭도다. 옛날 제왕의 가문에 없었던 일이 우리 가문에서만 있었으니, 동방에 끝은 정조와 믿음이 있는 여인이 있다는 근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찌 우리 가문의 아름다운 법도에 빛이 나지 않겠는가? 더구나 화순귀주는 평소 성품이 부드럽고 고우며 덕의가 순일하게 갖추어져 있었으니, 대체로 본디부터 죽고 사는 의리의 경중을 잘 알고 있으므로 외고집의 성품인 사람이 자결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 참으로 어질도다. 화순귀주와 같은 뛰어난 행실이 있으면 정문의 은전을 어찌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를 잊은 적이 없었으나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다. 지금 각도의 효열을 포상하는 때를 맞아 슬픈 감회가 더욱더 일어난다. 유사로 하여금 화순귀주의 마을에 가서 정문을 세우고 열녀문(烈女門)이라고 명명하라.”<sup>85)</sup>

앞의 영조대에 화순옹주의 줄기를 기록한 사신(史臣)과 같이 정조 또한 화순옹주의 행동에 감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남편을 따라 죽는 종사가 이미 높이 칭찬 받는 행위

83) 英祖實錄：91卷 34年 1月 17日 甲辰條.

84) 英祖實錄：91卷 34年 1月 8日 乙未條.

85) 正祖實錄：15卷 7年 2月 6日 丁卯條.

가 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정조나 사관 모두 의외의 비교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반 여염집의 여인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왕실의 여인이 해냈다는 비교가 그것이다. 사실 유교 윤리를 모범적으로 지켜야한다는 왕실과 양반층에 대한 우리의 상식으로서의 저 비유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기에 더하여 정조는 옛날 제왕의 가문에 없던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종사의 일로 수차례 포상을 해왔던 사실은 아예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sup>86)</sup>

이전 시기의 다른 사례 몇 가지를 일단 살펴보자. 영조 28(1752)년, 전 판서 김진규의 처 정씨에게 정려를 명하였다. 남편이 죽자 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을 먹고 미음도 마시지 않아 결국 따라 죽었기 때문이다.<sup>87)</sup> 영조 48(1722)년, 판부사 이창의의 졸기에는 그의 아내 윤씨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진(自盡)하여 한 무덤에 장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영조는 정문을 명하고 제문을 친히 지어 보냈다.<sup>88)</sup> 영조 40(1764)년에는 천민도 등장한다. 북도의 관비(官婢) 송아의 가족이 천역을 면하게 되었는데, 송아가 그의 남편이 서울에 거의 20년이나 가있었는데도 절개를 지키고 있다가 그가 죽었다는 소

식을 듣자 따라 죽었기 때문이다.<sup>89)</sup> 화순옹주의 예가 유일한 것이 아닌데 정조는 왜 그렇게 감동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종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리한 비유를 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어쩌면 정조와 사신의 말 그대로, 또 영조가 화순옹주의 자살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 왕실에서는 오히려 종사가 권장되지도, 권할 수도 없는 것이었을 수 있다. 이 시기 이후, 평민·중인·천민들의 종사 사례 및 정표되었다는 기록이 많이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지도 모르겠다.<sup>90)</sup>

실제로 이 시기 이후, 종사를 이유로 정표를 받는 사례가 자주 눈에 띈다. 정조 11(1787)년에는 평산 사인(士人)의 아내가 남편이 죽어 자진했고, 안주 병영 소속 노(奴)의 처가 남편이 죽자 약을 마셔 거의 죽게 된 지경에서도 마음으로 맹세하고 무덤을 지켜 포상을 받았다.<sup>91)</sup> 정조 13(1789)년, 북청 유학(幼學) 이정상의 처 강씨가 남편이 위독하여 점쟁이의 말대로 남편 대신 스스로 목매고 죽어 남편의 목숨을 구해 정표를 받았으며, 무산에 살던 역리(驛吏)의 처는 남편이 죽자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르고 난 후, 물에 빠져 자살했다.<sup>92)</sup>

이렇게 종사가 유행하고 그 유행을 권장 혹은

86) 정조의 행장(行狀)에는 이를 두고 '시골 마을의 필부 서민들조차도 해내기 어려운 일인데 더구나 제왕의 집안이겠는가'라고 언급하고 있다. 正祖實錄：54卷 附錄 012 行狀 5.

87) 英祖實錄：76卷 28年 5月 23日 癸未條.

88) 英祖實錄：119卷 48年 10月 23日 甲申條.

89) 英祖實錄：103卷 40年 12月 24日 辛丑條.

90) 그러한 현상이 정말 천민이나 평민들의 유교의식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을 더욱더 부각시켰던 위정자의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같은 맥락에서, 《五倫行實圖》와 같은 편찬물들도 대중교화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배계층에 대한 도덕적 압박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한다. 즉, 천민도 행하는 충과 효를 왜 양반이 지키지 않는냐는 논리를 더욱 강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 후기에 평민·천민 정표자의 증가가 신분제의 붕괴와 연관 있다는 기존의 견해와는 판이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기존 견해는 신분제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는 '유교의 대중화 정책'을 왜 위정자 스스로가 그토록 애써서 고수하려 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오히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신분제의 기반이 되는 유교 이데올로기는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논의는 간단히 해결될 논의가 아니기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91) 正祖實錄：23卷 11年 4月 16日 癸丑條.

조장했던 지배계층들이 자신들의 딸이나 부인에게 종사를 권했을지는 의문이다. 이 의문은 자신의 딸의 종사를 막으려 했고, 또 종사한 딸에게 큰 상심을 받았던 영조를 볼 때 더욱 강해진다. 물론 그 뒤에 정조는 화순옹주를 극찬했지만, 그 극찬은 오히려 그 동안 왕실에서는 종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평민이나 중인은 물론이고 천민들까지 남편을 따라 죽는데 왜 왕실을 비롯한 최고위 지배계층 가문의 여성들은 종사를 실행하지 않았을까? 이 모순이야말로 자살이 개인의 절대적 선택이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을 따라 죽는 여성들의 죽음이 칭송을 받았지만, 어떤 여성들은 죽고 또 다른 여성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지 않은 여성들이야말로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계층(종사를 칭송했던 계층)이었기에 이 모순은 더욱 커진다. 이는 성차에 따라 자살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는 것에 더해, 계급 또한 자살의 해석과 이용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6. 맺음말

인간들은 삶에 있어서도 죽음에 있어서도  
모두 동등하지 않다. - 델핀 게이  
자살은 단지 사회적인 악이고 도덕적 범죄는 아니다.  
자살의 형태들은 미덕을 가장한 형식에 불과하다. -  
뒤르켐

이상으로 《審理錄》을 중심으로 자살을 둘러싼 조선 후기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자살은 자살자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심리적·감정적인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각기 다르게 해석되면서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강간이나 살인, 간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살 또한 그 속에서 성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차별을 양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자살은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행위자 자신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는 다른 사건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살자의 선택과는 또 다른 지점에서 타인의 선택 혹은 사회의 선택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는 더욱더 복잡해진다.

자살자, 자살 원인제공자, 자살을 가장한 살인자, 자살 방조자.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자살은 단어 자체의 의미와는 달리 단순한 개인의 선택 혹은 개인의 의지만이 반영된 행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인간의 자살에는 타인의 행위 혹은 사회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성차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성차에 따라 자살 사건을 수사하는 출발 지점이 달라지고, 그 원인을 찾는 방식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게 되며, 죽음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해석 및 평가도 달라졌던 것이다.<sup>93)</sup>

92) 正祖實錄：27卷 13年 7月 14日 戊戌條.

93) 물론 성차뿐만 아니라 계층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노비가 충(忠)을 내세워 자살하는 상황은 매우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의 자살은 대부분 무지 또는 경박한 성품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또 실제로 만약 낮은 계층의 여성이 열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취해야 했다. 때문에 성차와 계층,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크로스체킹이 필요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2007년도 기초의학학술대회에서 이 논문의 초고를 발표할 당시, KAIST 신동원 교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다. 비록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제대 강신익 교수께서는 이 글에서 언급된 조선의 사례를 듀르켐의 4가지 유형 중 어디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다. 필자는 듀르켐의 4가지 유형은 여러모로 유용한 분석틀이지만, 그것을 실제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자살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이기적 자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살도 어떤 면에서는 운명론적 혹은 집단 무질서적 자살의 성향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문에 조선 후기를 놓고 볼 때, ‘자살은 독립의 한 방식이다. 이런 성격 때문에 모든 권력들이 자살을 싫어한다.’라는 콩스탕의 말은 일부 정확한 지적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틀린 말이 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조선 후기의 위정자들도 자살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체제에 대한 일탈행위였고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위정자들은 자살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치평가를 하고, 자살을 제도적으로 포상하고 권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 권장사항의 예외가 되고 싶어 했다. 아무리 칭찬하더라도 자살은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의 중심엔 성차가 존재했고, 그 성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여전히 ‘계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위정자들에게 자살은 일탈행위였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위 더 심하게는 도피성의 행위로 취급받았다. 그것이 비록 ‘忠’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소극적 행위라는 평가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자살을 한 사람이 남성이 아니라 ‘烈’을 지키려고 했던 여성이었다면 평가는 달라졌다. 예외적으로 자살이 칭송을 받고 다른 ‘살아있는’ 여성들에게 권장되기까지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자살이 칭송 받는 죽음

의 선행 연구를 이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료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정리하는 과정부터 많은 혼선을 겪고 효율적이지 못한 시간 사용을 반복하게 되어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정밀한 분석, 깊이 있는 상상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주제로 연구

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타이밍과 정황-이 필요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죽은 이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자살은 ‘부질없는 것’으로 추락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평가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 조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모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호함 때문에 자살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위정자들은 물론, 현재 궁지에 몰린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 보려는 살아있는 개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때문에 자살은 때로는 강간, 살인, 간통, 더 극단적으로는 부활로까지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변신의 과정과 변신된 모습, 그리고 그 변신의 모방 등 자살이 중심이 된 여러 사건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면 성담론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글에서는 《審理錄》이라는 한정된 사료를 이용하면서, 그 사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실한 내용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 글은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인해 《審理錄》이라는 단편적인 사료를 넘어서서 조선 후기의 제도·문화·경제 분야

가 계속 진행된다면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색인어 : 《審理錄》, 《五倫行實圖》, 자살, 성별, 성차(性差), 정절, 정조(正祖), 옥사(獄事), 형조

투고일 2008. 10. 22.      심사일 2008. 11. 1.      심사완료일 2008. 11. 13.

반대로 운명론적 자살로 분류하더라도 그 사례가 이기적 자살의 성향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에 거의 모든 자살에 듀르케임의 4가지 유형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조선 후기의 사례들도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할 수 있겠다. 두 분의 날카로운 지적에 늦게나마 감사를 표한다.

= Abstract =

## The Interpretation of Suicide by Gender in Late Joseon Dynasty

: around cases of suicide in <<Trial Document(審理錄)>>

JUNG Il-young\*

This paper focuses on cases of suicide in <<Trial Document(審理錄; *Simrirok*)>> which was published in Jeongjo(正祖)'s reign, and how to understand suicide cases in social context. Even though <<Trial Document>> is limited historical material to report for King, it is very useful to examine not only suicide case of those times but also the elite's recognition about suicide. Especially in this paper, the important point is not 'why and how did a suicide kill himself or herself' but 'how people did understand about suicide or a suicide'. In other words, the key point of this paper is 'discourse' of suicide.

There are so multifarious suicide cases in <<Trial Document>> and the reasons of suicide are also multifarious. However, <<Trial Document>> is worthy of note because it is the document which was recorded trial processes. In these processes, decision on 'suicide or murder' was the most essential point. So there were arguments on discerning whether a victim committed suicide or a murderer counterfeited a victim's suicide. The important thing was not only real evidence in these arguments. Belief, 'it is acceptable reason for suicide', was very important as a social context.

One of the important criterions was 'gender' to Joseon's elite. In spite of cases' similarities, the interpretation was completely different by gender. Men's suicide was understood as 'a foolish act' by the elite because they thought that 'normal man' would not commit suicide. Moreover, there were particular women's suicide cases which could not happen to men. The reason of these suicides was 'chastity'. The cases were also 'interpreted' by the people alive. These interpretation was based on the value judgement. And another important criterion was class. The elite had given a prize(旌門) to the women who suicided directly after their husbands' death. The elite themselves, however, did not suicide so much as the common people did. This contradiction shows that suicide is not a personal choice absolutely.

This paper searches into the meaning of suicide in late Joseon society, and look into 'gender'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of judgement.

Key Words : <<Simrirok>>(審理錄), Trial Document, Suicide, Gender, Chastity, Jeongjo(正祖), the Ministry of Justice(刑曹), Administration of the Major Criminal Cases(獄事)

---

\*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Gang University

